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허6945 거절결정(특)
원 고	A
원고승계참가인	B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방기인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9. 8. 29. 2018원45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5, 8호증)

1) 발명의 명칭: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7. 4. 28./제10-2017-0054995호

3) 권리자: 원고 승계참가인

4) 발명의 설명 및 주요 내용

㉮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변화하는 발전자기력을 발전코일에 쇄교(관통)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기 생산에 따라 발전코일에서 발생하여 발전코일을 쇄교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기력의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유도전자기력"을 자기력의 진행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정 위치로 유도, 발전자기력과 유도전자기력의 충돌을 방지하고, 유도된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0003】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계자를 회전시키면 발전코일 철심과 발전계자의 자기력이 반응 척력; 인력이 발생하여 회전축의 회전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작용 저하된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등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회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보일러 등 동력 발생장치를 이용 동력(스팀)으로 변환 시키고, 발생하는 동력을 다시 회전발생장치(터빈)를 이용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회전축을 회전시켜야 하고, 조력,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획득하고 획득된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회전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복

잡한 구조의 설비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설비의 제작과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0004】또한,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열 발산과 기계적 마찰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 에너지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유해 물질과 소음 등 공해가 발생 되고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0005】또한, 전압을 조종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여자(1차)코일에 전기를 인가 발생하는 자기력을 발전(2차)코일에 쇄교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발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기력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손(히스테리시스손; 와전류손)과 동손(코일저항)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과, 발전코일에 자기력이 쇄교 함으로서 생산되는 전기에 유도 된 유도전자기력이 발생 발전코일로 진입하는 자기력의 진행을 방해하는 척력 저항으로 작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와 달리 에너지원을 변환 없이 직접 발전에 이용하므로 복잡한 구조의 에너지 획득이나 변환에 이용되는 장치가 없어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과 설치비용이 저렴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발명의 효과

【0014】본 발명에 의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달리 에너지변환 장치가 없어 구조가 단순하므로 제작과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손쉬우며, 유해물질과 소음 등 공해 발생이 없고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고, 전압을 달리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와 달리 발전코일을 쇄교하기 위해 진행하는 발전자기력의 진행을 방해하는 척력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고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추가된 전기를 생산하므로 발전 효율이 높은 이점이 있다.

ㅁ 구체적인 내용

<도 1> 본 발명의 구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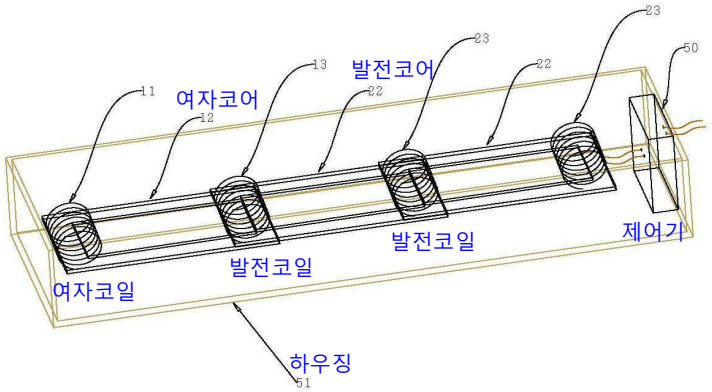

【0017】<도 1>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여자코어(12)와 발전코어(22)를 나타내기 위한 도로써 (A)는 여자코어의 구성을 (B)는 발전코어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발전셀(52)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로써 (C), (D)는 여자코어(11)와 발전코어(22) 의 적층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또한 <도 4>는 발전모듈(53)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써 (E), (F)는 발전셀(52)이 결합 되어 구성된 발전모듈(53)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2> 본 발명의 여자코어와 발전코어의 구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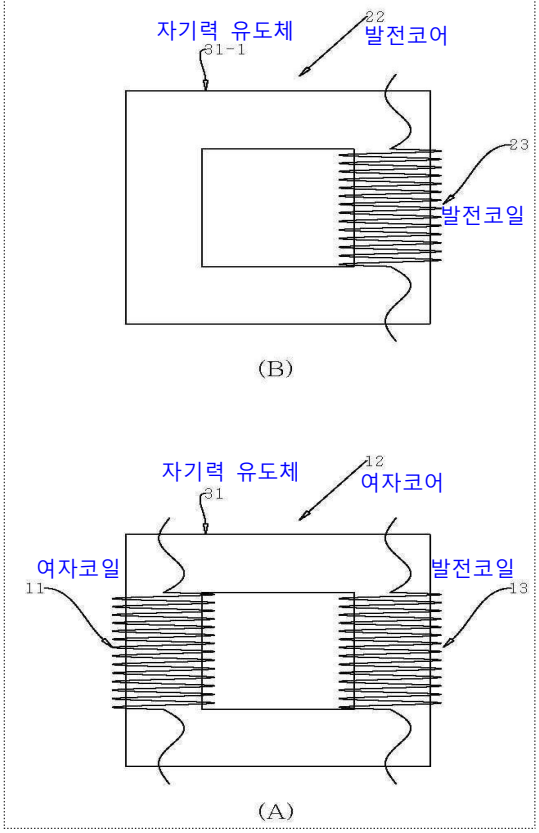

【0018】또한, <도 5>는 본 발명의 전기입력에 따른 여자코어(12)와 발전코어(22)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로써 (G), (H)는 전기를 인가받은 여자코일(11)에서 발생하는 자기력(41)의 진행과 발전코일(13)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자기력(43)의 진행을 나타내고 위한 도이고, (I), (J)는 발전코일(13)에서 생산된 유도전자기력(43)이 자기력유도체(31-1)에 유도되고 발전코일(23)을 쇄교할 때 발전코일에서 생산되는 유도전자기력(43-1)의 진행을 설명하기 위한 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발전코일을 쇄교하는 자기력과 발전코일에서 생산되는 유도전자기력의 진행과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써, (K)는 자기력유

도체 적층없는 상태의 여자코어에서 발생한 자기력(41)이 진행, 발전코일(13)을 쇄교할 때 발생하는 유도전자기력(43)이 진행, 자기력(41)과 충돌하는 예를 나타내기 위한 도이고, (L)은 자기력유도체가 발전코일(13)에 적층된 상태의 유도전자기력(43-1)의 진행 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5> 자기력과 유도전자기력의 발생과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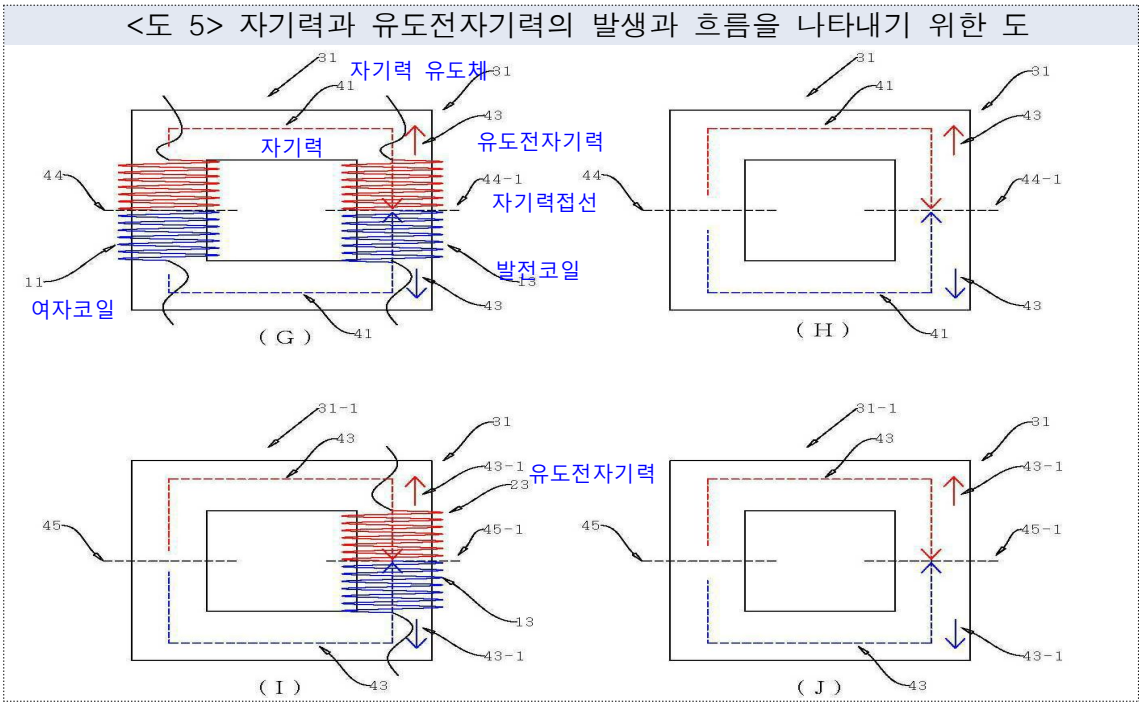

【0019】본 발명에 의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도 2>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폐쇄회로를 구성하고 여자코일(11)에서 생산되는 자기력(41)을 흡수 자기력선을 형성하는 자기력유도체(31)가 구비되고 상기 자기력유도체 양면에 전기를 공급받아 자기력을 생산하는 여자코일(11)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코일(13)이 각각 권선 되어 상기 여자코일에서 생산되는 자기력을 흡수 자기력선(41)을 형성 자기력을 발전코일에 쇄교시키는 여자코어(12)와,

【0020】<도 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폐쇄회로를 구성하고 발전코일(13), (23)에서 생산되는 유도전자기력을 흡수 자기력선을 형성하는 자기력유도체(31-1)가 구비되고 상기 자기력유도체 일면에 발전코일(23)이 권선 되어 구성된 발전코어(22)가 구비되어,

【0021】<도 3>의 (C),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행 배치된 여자코어(12)의 발전코일(13)에 발전코어(22)의 자기력유도체(31-1)가 적층 되고 이후 적층 된 발전 코어(22)의

발전코일(23)에 후행하는 발전코어(22)의 자기력유도체(31-1)가 적층 배치되어 구성된 발전셀(52)이 구비되어,

【002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품을 수납 거치하는 하우징(50)에 수납 거치되어 구성된다.

【0025】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의 작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26】먼저, 제어기(50)에서 교류전기나 단락을 반복하는 직류전기를 인가하면 여자코어(12)의 여자코일(11)에 <도 5>의 G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자기력(41)이 발생하고 발생한 자기력은 자기력유도체(31)에 자기력선(41)을 형성하며 진행 자기력유도체 일면에 권선 된 발전코일(13) 중심부를 쇄교 발전코일에 전기와 생산된 전기의 전류에 유도된 유도전자기력(43)이 생산된다,

<도 3> 본 발명의 발전셀 구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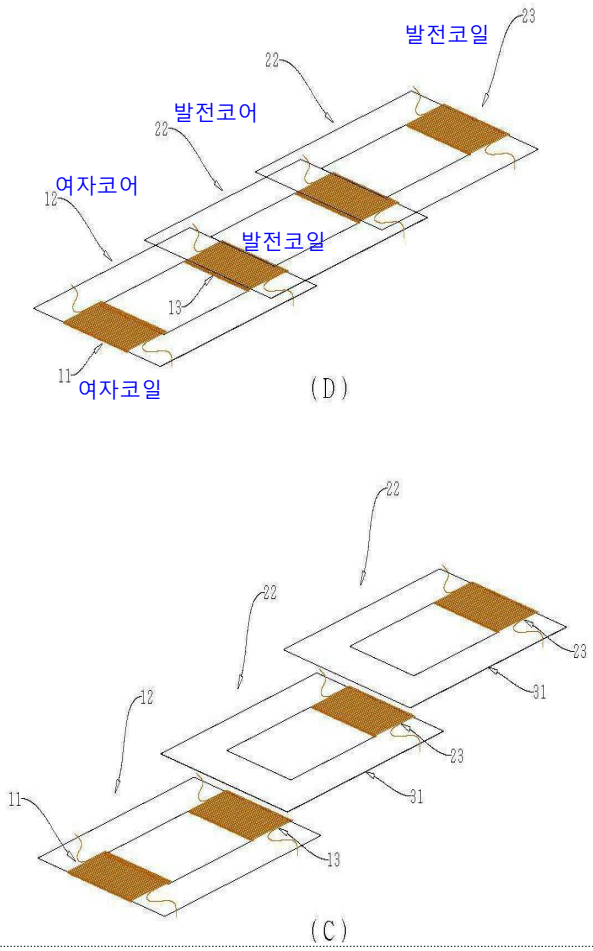

㈐ 산업상 이용가능성

【0036】본 발명에 의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에너지 변환으로 인한 에너지손실과 유도전자기력의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이 없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에너지변환 장치가 없어 유해 물질과 소음 등 공해 발생이 없고 구조가 단순하여 관리가 손쉬운 전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5) 청구범위

【청구항 1】 발전코일에 변화하는 자기력을 쇄교(관통) 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 있어. 입력받는 전기로 생산된 자기력으로 전기와 유도전자기력을 생산하는 여자코어(12)와. 유도전자기력으로 전기와 유도전자기력 생산하는 발전코어(22)와. 전기의 입 ; 출력을 제어하고 조종하는 제어기(40)와. 구성품을 수납 거치하는 하우징(51)으로 구성되어,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자기력을 자기력유도체를 이용하여 유도, 차순에 배치된 발전코일에 쇄교 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발전 코어(22)는 도 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폐쇄회로를 형성하고 유도전자기력을 흡수 유도하는 자기력유도체(31-1)와 상기 자기력유도체 일면에 발전코일(23)이 권선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3】 도 3의 (C) 및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자코어(12)의 발전코일(13)에 발전 코어(22)의 자기력유도체(31-1)가 적층 배치되고, 선 순위 배치된 발전코어(22)의 발전코일(23)에 후 순위 배치되는 발전코어의 자기력유도체(31-1)가 적층 배치되어 발전셀(52)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4】 설계용량의 발전셀(52)이 결합 발전모듈(53)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5】 ~ 【청구항 9】 삭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흠이 있다.'는 등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4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3. 8. 청구항 5 내지 9를 삭제하고 청구항 1 내지 4 및 발명의 설명 중 일부를 보정하는 내용이 담긴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5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21. '이와 같은 보정서에 의하여 다시 심사하였으나 2018. 2. 13.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

3) 이에 원고는 2018. 9. 14. 의견서와 청구항 1 및 발명의 설명 중 일부를 보정하는 취지의 재심사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갑 제7, 8호증).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16. '의견서와 보정서에 의하여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2018. 2. 13.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4) 원고는 2018. 11. 1. 특허심판원에 2018원4507호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설명 기재가 불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5) 원고는 2019. 9. 2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3.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에 관한 권리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2020. 3. 20. 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쳤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3. 23.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전기 변압기구조의 발전에서 발전 코일에 자성체를 적층하는 것으로 구조와 구성이 단순하여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손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0006】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와 달리 에너지원을 변환 없이 직접 발전에 이용하므로 복잡한 구조의 에너지 획득이나 변환에 이용되는 장치가 없어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과 설치비용이 저렴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4】본 발명에 의한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달리 에너지변환 장치가 없어 구조가 단순하므로 제작과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손쉬우며, 유해물질과 소음 등 공해 발생이 없고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고, 전압을 달리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와 달리 발전코일을 쇄교하기 위해 진행하는 발전자기력의 진행을 방해하는 척력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고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추가된 전기를 생산하므로 발전 효율이 높은 이점이 있다(발명의 효과).

【0017】<도 1>은 본 발명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여자코어(12)와 발전코어(22)를 나타내기 위한 도로써 (A)는 여자코어의 구성을 (B)는 발전코어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발전셀(52)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로써 (C),

(D)는 여자코어(11)와 발전코어(22) 의 적층 과정을 나타내는 도이다, 또한 <도 4>는 발전모듈(53)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써 (E), (F)는 발전셀(52)이 결합 되어 구성된 발전모듈(53)을 나타내는 도이다.

【0035】상기한 방법으로 여자코어의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코일을 쇄교 하는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발전 저항 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생산에 따라 생산되는 유도전자기력을 발전코일에 쇄교시켜 전기와 유도전자기력을 생산하고, 선 순위 배치된 발전코어의 발전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자기력을 후 순위 배치된 발전코어의 발전자기력으로 이용 전기를 생산한다.

위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코일과 발전코일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입력받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작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 볼 수 없고 전기를 소모하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하며, 입력 전기에너지와 출력 전기에너지가 같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기에너지 생산 장치 자체를 생산·설치하기 위한 비용만 들어갈 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기에너지 생산 장치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사용되는 여자코일·여자코어·발전코일·발전코어 등을 적층하여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통상 동손(Copper loss,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 내에 발생하는 저항 손실, 을 제1호증의 8)·히스테리시스 손(Hysteresis los

s, 강자성 재료를 교류로서 자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을 제1호증의 6) 및 와전류손(도체 내부에 생기는 기전력에 의해 도체 내부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는 전류로 인한 손실, 을 제1호증의 7) 등으로 인한 입력 에너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너지 변환으로 인한 에너지손실과 유도전자기력의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이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어떤 원리에 의하여 위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별명의 설명에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된 전기에너지를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도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도 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철손과 동손 등으로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발명의 설명에는 유도 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로 입력 전기에너지보다 큰

출력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고 볼만한 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입력 전기에너지보다 출력 전기에너지가 크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과 도 1 내지 6에 도시된 구성의 내부 어디에서든 새롭게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명세서 어디에서도 이러한 구성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구성요소가 없다면 에너지 보존법칙을 고려할 때 입력 전기에너지보다 출력 전기에너지가 클 수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도 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유도전자기력은 자기력선을 형성하는 유도체가 다르므로 자기력선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척력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척력저항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이는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의 손실 일부를 제거하는 것일 뿐 입력 전기에너지 외에 새로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손쉽게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부분에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김광남

판사 정희영